

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5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2018. 08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법제처에서 선정한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과제로서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규정을 신설하고, 조례에 사용된 용어 일부를 법령 체계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환경친화적 자동차 주차요금 감면규정 신설(안 제3조제2항제3호)

-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1조 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함.

※ 환경친화적 자동차 : 전기·태양광·하이브리드 자동차 등

나. 조례 용어 정비(안 제1조, 제3조제2항)

- 제1조(목적)의 주차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대한 약칭(이하 “ ”이라 한다)을 각각 제7조와 제12조로 이동

- ※ 제1조의 목적규정은 입법목적을 간결하고 명확히 하여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위한 것이므로 약칭을 사용하지 않음
- 법령문은 한글로 표기하는 게 원칙이므로 단위를 한글로 정비
: % → 퍼센트, cc → 시시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

제10조, 제11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

- 1) 입법예고 : 2018. 6. 12. ~ 2018. 7. 3. 제출의견 없음.
- 2) 규제심사 : 규제사무 없음
- 3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
- 4) 성별영향평가 : 원안동의
- 5) 조례·규칙심의회 : 원안의결

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주차장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및”을 “「주차장법」 및”으로, “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”을 “시행령”으로 한다.

제3조제1항 본문 중 “법 제7조제1항”을 “「주차장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7조제1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1호의2 중 “50%”를 각각 “50퍼센트”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“1,000cc미만”을 “1,000cc 미만”으로, “50%”를 “50퍼센트를”로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1조 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.

제12조제2항 본문 중 “영 제6조제1항”을 “「주차장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6조제1항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주차장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및 같은 법 시행령(이하 "영"이라 한다)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「주차장법」 및 ----- ----- 시행령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
<p>제3조(주차요금 및 가산금) ①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(이하 "공영주차장"이라 한다)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. 다만,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민간노외주차장(이하 "민영주차장"이라 한다), 「자연공원법」 제4조부터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국·도·군립공원의 주차장, 「관광진흥법」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관광사업체의 주차장, 「관광진흥법」 제52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해당 주차장 설치자가 정한다.</p>	<p>제3조(주차요금 및 가산금) ① 「주차장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7조제1항 -----</p>
<p>②군수가 설치한 공영주차장을</p>	<p>②-----</p>

이용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
요금을 다음과 같이 경감하여
징수할 수 있다.

1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
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소유한
자동차로서 같은 법 제35조에
따른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
지가 부착되고, 해당 장애인이
탑승(자가운전이나 대리운전
하게 하여 승차하는 경우를
말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
한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
의 50%를 경감할 수 있다.

1의2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
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
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중
상이자의 소유 자동차로서 해
당 상이자가 탑승한 자동차에
대하여 주차요금의 50%를 경
감할 수 있다.

2.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
제2조에 따른 배기량 1,000cc
미만의 경형자동차에 대하여
주차요금의 50% 경감할 수 있
다.

<신 설>

-----.

1. -----

50퍼센트-----.

1의2. -----

----- 50퍼센트-----
-----.

2. -----
----- 1,000시
시 미만-----
----- 50퍼센트를 -----
-----.

3.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

③·④ (생략)

제12조(부설주차장 설치기준) ①
(생략)

②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부설
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
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
기준은 영 제6조제1항의 별표 1
과 같다. 다만, 「건축법 시행
령」 별표 1의 제1호가목에 따른
단독주택(연면적 합계가 100제
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)
및 농·임업용 창고를 건축하거
나 설치하려는 자는 부설주차장
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.

③·④ (생략)

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
제11조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
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
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
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.

③·④ (현행과 같음)

제12조(부설주차장 설치기준) ①
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 「주차장법 시행령」(이
하 "영"이라 한다) 제6조제1항-
-. -----

-----.

③·④ (현행과 같음)

관계법령 발췌

□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3.3.23., 2016.12.2.>

1. "자동차"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.
 - 가. 「자동차관리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
 - 나. 「건설기계관리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
2. "환경친화적 자동차"란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, 태양광자동차, 하이브리드자동차, 연료전지자동차 또는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46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자동차를 말한다.
 - 가. 에너지소비효율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
 - 나. 「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6호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공해자동차의 기준에 적합할 것
 - 다. 자동차의 성능 등 기술적 세부 사항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
3. "전기자동차"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(動力源)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.
4. "태양광자동차"란 태양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.
5. "하이브리드자동차"란 휘발유·경유·액화석유가스·천연가스 또

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연료와 전기에너지(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포함한다)를 조합하여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.

6. "연료전지자동차"란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.

7. 삭제 <2016.12.2.>

8. 삭제 <2016.12.2.>

9. "수소연료공급시설"이란 연료전지자동차에 수소를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.

[전문개정 2011.5.24.]

제10조(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)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11.5.24.]

제11조(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) ① 시·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소유자로 하여금 그 자동차의 외부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지(標識)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.

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표지의 규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3.3.23.>

[전문개정 2011.5.24.]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비용발생 요인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5항

3. 미첨부 사유

- 환경친화적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규정 신설과 조례 용어 정비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조례로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없음.

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 도시주택과장 주현관
연락처	(033) 330 - 2470